국무총리 훈령 제167호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규정

제 1 조 (설치) 새 시대 국정운영의 신기원을 마련하고 국정지표의 효율적인 실천을 기하기 위하여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등을 개선함에 있어, 중요한 개선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국무총리에게 건의한다.

1.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작업의 기본방향 및 그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안에 대한 심의
3. 기타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국무총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건관련 부처장관
2. 법제처장
3.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
4.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5. 대통령정무 제2수석비서관
6. 대통령비서실 관계수석비서관
7.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인사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개혁위원회 관리실장이 된다.

제 8 조 (수당)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끝.